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00호  
2017. 3. 23.(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42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5

제64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 8

제6423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제64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 12

제6425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6426호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 ..... 50

제642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제6428호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53

제6429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제6430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7

제6431호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제6432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제6433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제643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62

제6435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제6436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67

제6437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제6438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69

제6439호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 69

제6440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제6441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제644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78

제6443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9

제6444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제6445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3

제6446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4

제6447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6

제6448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6

제6449호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8

제6450호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90  
 제6451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2  
 제645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93  
 제645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94  
 제6454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9  
 제6455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0  
 제645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1  
 제6457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3  
 제6458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103  
 제6459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104  
 제6460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107  
 제6461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9

**[규 칙]**

제354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0  
 제354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4

**[훈 령]**

제1005호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 117

**[예 규]**

제118호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 ..... 125  
 제119호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27

**[입법예고]**

제2017-681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9  
 제2017-71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1  
 제2017-74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2  
 제2017-74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3  
 제2017-76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5

**◆ 고 시**

제2017-88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 ..... 136  
 제2017-10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지형도면 고시 ..... 136  
 제2017-102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2017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 148  
 제2017-103호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89  
 제2017-104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95  
 제2017-105호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97  
 제2017-106호 양천구 신월1동(곰달래꿈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09

◆ 서울특별시조례 제645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을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것”을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인복지시설(「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제26조제4호 중 “초등학교·중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로 한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사진관, 표구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일반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독서실, 기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 제9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군부대시설(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시설에 한정한다)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거.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28조제3항제6호 중 “유스호스텔”을 “야영장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 및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스호스텔”을 “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마권 전화투표소”를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관광휴게시설”을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 부수 시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록매체복제업”을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을”을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광휴게시설”을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단란주점”을 “단란주점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것”을 “것(같은 호 다목의 목욕장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호 라목의 산후 조리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가목,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나.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진관, 표구점
  -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마. 일반음식점
  -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사.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아. 독서실, 기원
  -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뒹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 중 주유소”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가목,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3호 중 “집회시설”을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1 중 제1호가목(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인 토지.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도 및 임상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에 적용한다.

제3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시민의 알권리 제고와 정보접근성 등의 향상을 위해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을 실현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재정비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나.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위주의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허함(안 제25조제2호 및 8호).



- 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용도지역 내 유아 교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호).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등), 다목(자동차영업소), 마목(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거목(다중생활시설), 너목(제조업소 등), 러목(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의 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건부 허용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호, 제28조제3항제1호).
- 마.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군부대시설 내 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9호).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신규용도로 도입된 야영장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불허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기능을 수반하므로 주거지역에서 불허함(안 제28조제3항제6호, 제29조제6호).
- 사.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 사행산업으로 규정되는 경마, 경륜, 경정 관련시설은 불허하고, 일단의 면적을 요하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함(안 제 30조제1호, 제35조제2호, 제38조제3호).
- 아.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지정취지 달성 및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31조 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제7호).
- 자.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산업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금은세공업 공장을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4호, 제33조제1항제2호)
-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건축물 명칭을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 카.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지정취지에 걸맞도록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해당 용도지역의 취지와 걸맞지 않은 문화 및 집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을 불허함(안 제36조제2호, 제37조제2호 및 제10호, 제3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가목, 제11호, 제12호 및 제37조제3호 및 제5호, 제11호가목,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삭제).
-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함(안 제54조제14항).
- 파.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로 함(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호가목(3)).

◆ 서울특별시조례 제6454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